

제 433 호

1974.2.2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 택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보

차례

◎ 조례

- 제 818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 ... 3
제 819호 서울특별시세의파세면제에관한특별조례
중개정조례 3

◎ 규칙

- 제 1344호 서울특별시운전면허접수제행정처분규칙
개정규칙 3

◎ 고시

- 제 17호 도시계획시설(상수도)결정및지적승인 24

◎ 공고

- 제 27호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완료공고 24

- 제 28호 환지예정지 변경지정공고 25

- 제 29호 분뇨특별청소제외(비수거)지역지정공고 25

◎ 사령

◎ 정정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레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4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서울특별시조례제 818 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설치조례 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조 중 90일이내로 180일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의 파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4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서울특별시조례제 819 호

서울특별시세의 파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세의 파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3항 중 "1973년 12월 31" 을 "1974년 12월 3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규 칙

서울특별시운전면허 점수제 행정처분 규칙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년 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서울특별시규칙제 1344 호

서울특별시운전면허 점수제 행

정처분규칙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운전면허 점수제 행정처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에 따라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행함으로써 운전

자의 법규 위반행위를 방지하여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내에 거주하는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 또는 동법에 의한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즉결 출두지시서를 교부받은 운전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배점기준) 교통법규 위반행위 점수배점은 별표 1 및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제 4 조 (배점기간 및 방법) 위반점수에 대한 배점은 매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되 1년간을 한도로 취소처분 점수(121점)에 도달할 때까지 위반시마다 해당 점수를 누산한다.

제 5 조 (처분구분) 이 규칙에 의한 운전 면허 행정처분은 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2종으로 구분한다.

제 6 조 (처분의 한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전

면허를 취소한다.

1. 별표 2에 의한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였을 때

2. 1년에 별표 1 및 별표 3에 의한 위반점수가 121점에 도달하였을 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 한다.

1. 별표 1 및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였을 때

2. 법원 출두기일에 출두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정지기간중 출두하여 즉시 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즉일로 정지처분을 철회한다.

3. 처분기준의 한계는 별표 4에 의한다.

제 7 조 (행정처분의 절차) ① 교통법 규 위반 운전자를 적발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두지시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당해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동사실을 서울특별시장(이)

<p>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관물을 납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출두 기일이 경과하여도 출두하지 아니 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p>	<p>금 납부기일내에 범칙금을 납부하 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였을 때 또는 법규위반 운전자가 벌금을 납부하고 그 납부증명서를 제출하 였을 때에는 차체없이 보관물을 반 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 만료일 12:00 이후에 반환한다.</p>
<p>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 고를 받았을 때에는 위반별 배점수 및 행정처분 내용을 면허대장(정, 사본)에 기재하고 보관물이 유실되 지 않도록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제 하여야 한다.</p>	<p>제 10 조 (보고) 짐수제 행정처분 결 과는 별첨 서식에 의하여 년 1회 1월 10일한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p>
<p>③ 다른 시도에서 이첩된 사항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며 다른 시도로 이첩할 사항은 경찰서장이 해당지로 직송하여야 한다.</p>	<p>부 칙</p>
<p>제 8 조 (행정처분의 통지) 위반별 배 점수 및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통 지는 범칙금 영수증서 또는 벌금 금 납부증명서 이면에 행정처분 사 항을 기록하여 본인에게 교부함으 로서 통지한 것으로 가름한다.</p>	<p>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7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제 9 조 (보관물의 반환) 행정처분 기 간이 만료되었거나 범칙자가 범칙</p>	<p>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집행중인자 와 법규위반자 및 사고야기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처분기준에 의한 다.</p>

<별표 1>

점수제 행정처분 배점기준

1. 통고처분항목

일련 번호	위반내용	위반법조	배점	내용
1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정지선위반포함)	도로교통법 제 5 조	5	신호기의 신호 또는 교통경찰관의 지시와 신호에 따르지 않을 때, 교차 로의 직전이나 정지선이 있을 때, 정 지선에 정지하지 않을 때
2	통행금지 및 제 한구역통행	도로교통법 제 6조제 1항 제 2 항	3	시장이 지정하는 금지 및 제한구역을 통행하였을 때, 경찰관이 위험방지를 위하여 금지 또는 제한한 구역을 통 행하였을 때
3	도로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도로교통법 제 54 조	3	경찰서장이 도로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한 구역을 통행하였을 때
4	혼잡완화를 위한 조치불응	도로교통법 제 7 조	2	경찰관이 거마의 통행이 정체 또는 정체 우려가 있어 필요한 조치 명령에 불응 하였을 때
5	통행구분위반 (중앙선침법)	도로교통법 제 11 조	15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 도를 통행하지 않을 때, 도로의 중앙 우측을 통행하지 않을 때
6	차선위반(진행로 위반)	도로교통법 제 11 조의 2 제 2 항	5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차선 에 따라 통행하지 않았을 때, 도로교통 법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 11조(차선에 따른 통행구분) 도로중앙우 측에 2 이상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을 때 그 차선에 따른 통행구분에 위반하였을 때

일련 번호	위반내용	위반법조	배점	내용
7	통행우선순위 위반	도로교통법 제 12조	2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가 내무부령이 정하는 최고속도의 순서에 위반하였을 때 (최고속도의 순서..... 세칙제 12조)
8	횡단등의금지 위반 가. 화전 나. 후진 다. 횡단	도로교통법 제 14조	3	저마의 정신적인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 회전횡단 또는 후진하는 행위
9	안전거리확보를 이행	도로교통법 제 15조	3	동일 방향 진행 앞차가 급정지하였을 때,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았을 때,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그 변경하고자 하는 진로를 진행하여 오는 제후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확보 불이행으로 진로를 변경하였을 때
10	진로양보불이행	도로교통법 제 16조	3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제차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를 제외하고는 통행우선순위의 제차가 뒤따를 때 도로의 우측단으로 피하여 도로를 양보하지 않을 때 ○동일순위 또는 제후차의 속도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하려고 할 경우 도로의 우측단으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을 때

일련 번호	위반내용	위반법조	배점	내용
11	앞지르기 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 17 조	15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 앞지르지 않을 때, 대면 교통 및 전방교통에 도주의하여 도로의 상황 및 속도에 따라 경음기 사용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행하지 않을 때
12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 21 조	3	우회전시 : 미리 도로 우측단으로 서행하지 않을 때 좌회전시 : 미리 도로의 중앙선에 따라 교차로 중심내측으로 서행하지 않았을 때 방향전환신호를 한 앞차의 진로를 방해하였을 때 선진입차의 진행을 방해하였을 때 진행방향 우측도로의 제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을 때 (동일순위차에 한함),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의 진행을 방해하였을 때 (진행방향 우측도로의 제차보다 우선)
13	직행 및 우회 전차 우선	도로교통법 제 22 조	3	좌로 방향전환시 직행 또는 우회전제차의 진행을 방해하였을 때, 미리 좌회전하고 있는 제차가 있을 때, 직행 또는 우회전 제차가 당해차의 진로를 방해하였을 때
14	보행자의 보호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 23 조	15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기 또는 경찰관의 신호에 따라 통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였을 때

월련호	위반내용	위반법조	배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였을 때
15	서행 및 일시정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 26 조	3	<p>서행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았을 때 ○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에서 서행하지 않았을 때 ○ 경사로의 정상부근에서 서행하지 않았을 때 ○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서행하지 않았을 때 <p>일시정지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및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16	정차위반	도로교통법 제 27 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로, 횡단보도, 전널목 및 궤도시설내 ○ 교차로의 측단 및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 미터이내 ○ 안전지대의 우측 및 그 전후 양 측으로부터 각각 10 미터이내 ○ 정류장 표시주(판)로부터 10 미터 이내 (승합차제외) ○ 전널목 측단으로부터 10 미터이내 ○ 기타 시장이 지정한 장소

일련 번호	위반내용	위반법조	비점	내 용
17	주차위반	도로교통법 제 28 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기기, 기구 비치장소로부터 5미터이내 ○ 소방용 소방수조로부터 5미터이내 ○ 소방정, 소방수조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투입하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이내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이내 ○ 도로공사장구역 약단으로부터 5미터이내
18	주정차방법 및 시간제한	도로교통법 제 29 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도의 우측단에 정차하지 않았을 때, 다만 차도,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50미터 상거하지 않았을 때 ○ 승합자동차가 정류장에서 손님의 승강이 끝나는 대로 즉시 출발하지 않거나 뒤따르는 제차의 정차를 방해하였을 때 ○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시간 및 방법에 위반하였을 때
19	제차의 통화 조작 불이행	도로교통법 제 30 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 12조 (도로통행시 통화) ○ 보통승용, 승용, 소형승용,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조명등 ○ 원동기장치 자전거 : 전조등 ○ 피전인차 : 미등, 차폭등, 번호등 영 제 13조 (야간주, 정차시 통화) 미등

일련 번호	위반내용	위반법조	배점	내 용
				<p>차폭등 (원동기는 미등)</p> <p>영제 14조 (야간에 충하는 경우) 안개 기타 어둠으로 전방 100미터이내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없을 때</p> <p>영제 15조 (야간교행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조등의 광도감 (減) ○ 전조등의 광도하향 ○ 보조 전조등이 있을 때에는 전조등 소등 ○ 전조등 일시 소등 ○ 교통이 빈번한 장소는 계속하향 기타 자동차이외의 제자는 시장이 지정
20	제차의 신호 조작 불이행	도로교통법 제31조	3	<p>방향전환, 횡단회전, 서행, 정지 또는 후진하거나 동일 방향 진행 중 진로변경 시에는 손 또는 방향지시기나 등화로 그 행위 종료시 까지 신호하지 않을 때</p> <p>영제 1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우회전 및 진로변경시에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30미터이전 ○ 정지, 후진, 서행, 후방 차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하거나 시키고자 할 때
21	경음기의 사용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항	2	<p>경음기를 울려야 할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보통이지점, 경사로 또는 굴곡이 많

일련호	위반내용	위반법조	배점	내용
				은 산중 도로에서 경음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22	경음기의 사용 제한	도로교통법 제32조제3항	2	경음기를 울려야 할 장소 이외의 장소와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내에서 경음기를 사용하였을 때
23	정원초과 가. 승합 30% 미만 나. 승용 20% 미만 다. 화물 1명 초과 가. 승합 30% ~ 50% 나. 승용 20% 40% 다. 화물 2명 초과	도로교통법 제33조제1항	5 1.5	(시내버스 RH 제외) RH 출근시간전 2시간
24	적재초과	도로교통법 제33조제2항	3	길이 : 차질이의 1/10을 더한 길이 (소형 2륜차는 적재장치 길이에 30센치미터를 더한 길이) 폭 : 자동차의 적재함 (소형 2륜은 적재장치 길이에 30센치미터를 더한 길이) 높이 : 지상으로부터 3.5미터 (소형 3륜은 2.5미터, 소형 2륜은 2미터) 다만 경찰서장 허가시는 제외
25	자동차의 견인 제한위반	도로교통법 제34조	1	○ 피견인차 1대이상을 견인하였을 때 ○ 견인차의 전단으로부터 피견인차의 후단까지 25미터를 넘었을 때 ○ 고장차의 견인 ※ 구렌, 쇠사슬등으로 고정치 않았을 때 (피견인차, 전후륜(輪) 을 울려서 견인할 때)

제 433 호 시 보 1974.2.21. 30-13

일련 번호	위반내용	위반법조	배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견인차의 운전자가 당해차에 승용하지 않았을 때 (피견인차 전후륜을 올리지 않았을 때) ○ 피견인차와 견인차의 거리가 5 미터 초과하였을 때 ○ 자동차의 견인시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관의 조치명령에 불응할 때
26	제한속도준수위반(30 키로미터 미만) 가. 10 km 미만 나. 10 km 이상 - 30 km 미만	도로교통법 제 42 조	2 5	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세칙 제 12 조, 제 13 조의 제한속도 및 시장이 지정하는 제한속도를 위반할 때
27	안전운전불이행(경미)	도로교통법 제 43 조	2	조향(操向) 장치, 제동장치, 기타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상황 및 차량의 성능, 구조에 따라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였을 때
28	교양미필	도로교통법 제 44 조제 2 항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교양 미필 ○ 법규위반자 교육미필
29	운전면허 기재 사항 미변경	도로교통법 제 62 조	1	사유발생시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을 때
30	운전자준수사항 위반	도로교통법 제 44 조제 1 항제 2 항	2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수, 오토비산 행위 ○ 보호자없이 아동, 유아가 보행하고 있거나 맹인이 백색지팡이를 들고 보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을 때

30-14 제 433 호

1974.2.21.

일련 번호	위반내용	위반법조	배점	내용
		제 3 항	15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을 때
		제 5 항	5	○ 승객 또는 화물의 전락방지를 위하여 승강구의 문을 적절히 닫고 운행하지 않을 때
		제 6 항	5	○ 운전석으로부터 이석시 정지상태 보지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 7 항	2	○ 기타 시의 고시위반 *월동장구불휴대 (12월-익년 3월) ○ 교양카드불휴대 ○ 승객승차중 급유 (승합, 승용에 한함)

2. 측집회부항목

일련 번호	위반내용	적용법조	배점	내용
1	앞지르기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 18조	15	○ 앞차와 다른 제차가 나란히 통행할 때 앞지르는 행위 ○ 앞차가 다른 제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할 때 앞지르는 행위 ○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부근, 경사로 정상, 급경사의 내리목 및 시장이 정하는 장소 ○ 법령 규정과 경찰관의 지시에 의하여 정지 서행하는 제차를 앞지르는 행위

일련 번호	위반내용	적용법조	배점	내용
2	통행방법위반	도로교통법 제 47 조의 5	15	주행차선의 좌측차선으로 앞지르기를 하지 않았을 때
3	전널목통과방법 위반(일단정지)	도로교통법 제 20 조	15	철도전널목 일단정지 불이행 ○ 전널목직전에서 일단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통과치 않을 때 ○ 차단기가 내려졌거나 내려지려고 할 때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전널목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4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및 일시정지위반	도로교통법 제 24 조제 3 항제 4 항	10	일시정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하였을 때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좌측으로 일시 정지하지 않았을 때 피양: 교차로 아닌 장소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하였을 때 도로의 우측단으로 피양하지 않았을 때
5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입방해	도로교통법 제 47 조의 9 제 2 항	10	고속도로에서 긴급 자동차외의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있을 때에는 그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6	주차방법위반 차량의 조치불 응	도로교통법 제 29 조의 2 제 1 항	10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주차 정차방법의 변경 또는 이동 명령에 불응할 때
7	정비불량제차의 운전금지위반	도로교통법 제 35 조	10	도로운송차량법 또는 그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을 때

30-16 제433호

시

보

1974.2.21.

일련 번호	위반내용	적용법조	배점	내용
8	피로시의 운전 금지위반	도로교통법 제40조	10	파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로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을 때 (도로최면, 굴곡운전등 현저한 파로상태)
9	위험방지조치위 반	도로교통법 제41조	10	음주, 파로운전자가 운전금지 명령 및 필요한 조치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
10	위험방지등의 조치불응	도로교통법 제47조의3	10	고속도로에서 위험방지 조치지시에 불응할 때
11	제한속도위반 (30 키로미터 이상)	도로교통법 제42조	15	
12	안전운전불이행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15	타인에게 위해 초래 행위 중 ○ 전, 좌, 우 주시태만으로 위해초래시 ○ 굴곡운전 ○ 승객을 많이 태우기 위하여 도로의 좌우로 핸들을 급조작 및 급제동하는 행위 ○ 차선도로에서 간선에 진입시 일 단정지하였으나 직행차량에 현저한 위해를 초래하였을 때
13	교통사고발생시 신고불이행	도로교통법 제45조제2항	30	경찰관(관서 포함)에게 3세간이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14	횡단의 금지위 반	도로교통법 제47조의7	15	고속도로를 횡단하거나 회전 또는 후진하였을 때

일련 번호	위 반 내용	적용 법 조	배점	내 용
15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응	도로교통법 제 47 조의 10	10	고속도로에서 고장 기타의 사유로 운행할 수 없을 때 고장차량표지를 당해 차량의 후방노상에 설치하지 않았을 때
16	주·정차금지 위 반	도로교통법 제 47 조의 8	10	고속도로에서 법령의 규정 또는 경 찰관의 지시에 의하거나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때 이 외에는 주·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17	고속도로상 준 수사항위반	도로교통법 제 47조의 11	10	고속도로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내무부령으로 지정)
18	고속도로진입위 반	도로교통법 제 47 조의 9	10	차동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고자 할 때에 다른 제차가 고속도로를 통행 하고 있을 때 이를 방해하는 행위
19	면허증휴대 및 제시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 64 조	10	○ 면허증, 면허증의 증명서 또는 출두 지시서를 휴대하고 운전하지 않았을 때 ○ 경찰관의 제시요구에 불응하였을 때
20	지정 속도위반 가. 10 km 미만 나. 10 km 이상~ 30 km 미만 다. 30 km 이상	도로교통법 제 47 조의 6	10 20 30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속도에 위반 하였을 때
21	주취증 운전금 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 39 조	30	혈액 1 ml에 대하여 0.5 mg 또는 호 흡 1 l에 대하여 0.25mg 이상 음주 하고 운전하였을 때
22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불이행	도로교통법 제 45조제1항	60	즉시 (그때 그자리에서 곧) 사상자 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별표 2

취 소 처 분 기준

일련 번호	위 반 내용	적용 법 조	내 용
1	정원 초과 가. 승합 50 %초과 나. 승용 40 %초과 다. 화물 3명초과	도로교통법 제 33조	시내버스에 한함. RH는 제외 (RH : 출근시간전 2시간)
2	교통사고 야기도주	도로교통법 제 45조	사고발생시 조치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을때
3	타인에게 면허대여 (도난, 분실제외)	도로교통법 제 55조	면허소지자가 유면허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운전하게 하였을 때
4	결격 사유	도로교통법 제 57조	1. 18세 미만인자 (다만 원동기장치 자전차면허는 16세 미만) 2. 필요시 취소사유 가.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자, 뱅자, 농자, 아자) 나. 색맹자, 사지 활동이 정상하지 아니한자 다. 아편, 마약, 알콜중독자 3. 면허취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효력의 정지를 받고 있는자 4. 일종 대형면허를 받은자가 25세

제433 호 시 보 1974.2.21. 30-19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적 용 법 조	내 용
			미만이거나 3년이상의 자동차운전 경력이 없는 자
5	적성검사미필	도로교통법 제61조	운전면허를 받은날로 부터 매 3년마다 3개월이 경과하였을때 (*연기제도 활용)
6	운전면허 행정처 분 기간중 운 전	도로교통법 제65조	
7	출두기일경과 불출 두	도로교통법 제68조	정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자.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8	허위, 부정 수단으로 면허취득	도로교통법 제65조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9	위반점수초과	도로교통법제65조	1년에 121점이상
10	타인의 면허로 운 전한 행위	도로교통법 제44조제7항	면허취득자가 타인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로 운전하였을 때
11	행정처분 기간중의 자동차 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제7항	통행정지중의 자동차를 운전하였을때 (고의, 과실, 불문)
12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한 취소 자유에 해당 될 때		

2440

2
18

30-20 제433호 시 보 1974.2.21.

별표3		교 통 사 고				
구 분 배 점		사 망	충 상	경 상	신 고 (부상신고)	비 고
6 점				1	3	
10				2	6	
15		1		3	9	
20				4	12	
25				5	15	
30		2		6	18	
35				7	21	
40				8	24	
45	1	3		9	27	
50				10	30	
60				11	33	
70		4		12	36	
80				13	39	
90				14	42	
100		5		15	45	
110				16	48	
120 이하				17	51	
121 이상	2	6		18	54	취 소

2. 재산피해

배점	피해액	비고
3	5,000 원 미만	
5	5,000 원 이상 - 4 만원	
10	10 만원 이하	
15	20 만원 이하	
20	40 만원 이하	
25	60 만원 이하	
30	70 만원 이하	
35	80 만원 이하	
40	90 만원 이하	
45	100 만원 이하	
50	100 만원 초과	

2441

✓ ✓

별표 4 처분기준의 한계	피해자측에서 제시하는 견적서에 의 하되 조사경찰관이 피해부분을 확인 후 적정한 피해액을 산출 결정한다.
1. 사상구분	5. 판결결과에 따른 조치
의사의 진단 3주일 이상을 중상 5일이상 3주일미만을 경상, 5일 미만을 부상신고로 한다. 다만, 부 상신고 3명을 경상 1명, 경상 3명 을 중상 1명, 중상 3명을 사망 1명 으로 간주하여 면허 행정처분 한 다.	교통사고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포함)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면허의 행정처분을 철회한다.
2. 사망자의 처리기준	6. 행정처분의 결정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24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여 부상자가 교통사고가 주 원인이 되어 24 시간 경과후 72시간이내에 사망 하였을 때에는 사망으로 간주 처 리한다.	a. 중한 규정의 적용
3. 사고의 경합	교통법규위반(원인행위)보다 결과 발생(인적·물적피해)이 경합 때 에는 중한규정을 적용한다.
인사사고와 물적사고가 경합되었 을 때에는 중한 1개의 처분만을 적용한다.	b. 어린이 교통사고
4. 피해액의 산출	13세미만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당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1/2 가중한다. 다만, 6세미만의 유아가 보호자의 보호태만으로 사고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재산 피해액의 산출은 가해자와 운전자로서 불가항력적인 명백한	c. 피해자 과실 사고

피해자의 과실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라. 쌍방과실의 경우 (차대 사람)

자동차대 사람의 쌍방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면허 행정처분을 $1/2$ 경감한다.

마.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차가 사고조치 또는 신고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때에는 원인과 결과 중에서 중한 점수를 합산 처리한다.

7. 배점 및 처분

가. 배 점
운전자 1인 위반점수 120 점을 상한 점수로 한다.

나. 처 분
1) 점수제 행정처분 배점 기준에 의하여 4 점이 될 때까지는 위반시마다 통고처분 또는 즉시에 회부되어 5점부터는 위반점수를 합산하여 1점에 1일 정지처분

하고 120점에 도달할 때까지 점수는 계산한다.

(4 점 + 위반점수 = 정지일수)

다만 한번 정지 처분한 위반 점수는 다음 위반점수에 합산 정지처분치 않는다.

2) 국제운전면허 소지자는 점수제 행정처분 배점 기준에 따라 정지처분 (보관) 만 하고 취소처분은 하지 않는다.

8. 타법령규정 위반자

운수관계 법령 및 기타 법령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즉시에만 회부하고 면허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1조의 규정에 관한 처분규정

항목위반은 3일 이내에 경찰국장에게 보고하고 경찰국장은 3일 이내에 운수당국에 통보하여 차량 운행정지처분하도록 조치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 호

도시 계획시설 (상수도) 결정 및
지적승인

-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상수도)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43 조의 규정에

상수도 시설조서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4.4.4)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천호출장소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2. 11

서울특별시장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상수도용지	성동구 풍납동 195-4 195-5) 각 1부	693	천호수도관리사무소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천호출장소에 보관함.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7 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완료공고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7 호 (71.6.25)로 실시 계획인가된 바 있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준공을 도시계획법 제 85 조 제 1항 및 46 조 제 3 항의 규정과 견

설부고시 제 123 호 (73.4.4)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악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2. 9

서울특별시장

1. 사업집행지 : 시내관악구 봉천동 · 산 103-1 외 1필	조합장 박보섭
2. 사업명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5. 사업기간 : 착공 : 71.10.12 준공예정 : 73.12.20
3. 준공면적 : 39,646평	6. 준공년월일 : 74. 2. 9.
4. 사업시행자 : 국회직원주택지조성사업	7. 준공도면 : 별첨 인증도면

◎ 서울특별시 공고제 28 호

환지예정지변경지정공고

1. 망우·역촌·도봉·화양토지 구획 정리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고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를 지정합니다.

2. 환지예정지·변경지정서 및 도면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

공 고 (안)

◎ 서울특별시 공고제 29 호

분뇨특별청소제외(비수거)

지역지정공고

오물청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

리 1파 또는 각 해당구청 시민홀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 서류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될 것이나 서류송달을 받지 못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통지에 갈음합니다.

첨 부 : 1. 조 서

2. 도면(생략) .끝 .

1974. 2.

서 울 특 별 시 장

여 서울특별시 특별청소 지역에서 제외되는 분뇨의 비수거 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74. 1. 18

서 울 특 별 시 장

30-26 제 433 호

시 보

1974.2.21

구별	동명	통	구별	동명	통
도봉구	공능동	전지역	관악구	사당1동	일부지역(1, 2, 3, 4,
천호출장소	길동	"			5, 8, 9, 10, 11, 13,
양서출장소	파해동	"			16, 19, 20 통)
영동출장소	잠원동	"	천호출장소	암사동	일부지역(1-6, 8,
"	서초동	"			9, 10, 12 통)
"	도곡동	"		송파동	일부지역(1-4, 9통)
"	세곡동	"	양서출장소	발산동	"(1-3, 5통)
"	일원동	"	동대문구	신내동	"(3, 5통)
"	잠실동	"		계	14동

사령

◎ 1974.1.31.

도시가스 지방행정
사업소 사무관
박형원
지방서기판에 임함.
2호봉을 급함.
도시가스사업소장에 보함.

◎ 1974.2.9

성북구 지방전기
기사보지보
이두영
본인 임용포기로 인하여 74.
1.25자 신규 임용발령을 동일
자로 취소함.

◎ 1974.2.11

건축과 지방건축
(건축계장) 기좌 이은학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4.2.13

양정과 지방행정
(군복무휴직증) 서기보 김진우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양정과 기합부 공무원 신종만

인사사무처리규칙제 6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직을 명함.

중구 행정주사 방규영
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

중 구 지 방 행 정 주 사 보	조 광 래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구 해승
중 구 지 방 행 정 서 기	전 하 진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중 구 지 방 행 정 서 기	이 순 오	남부병원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박정우
서울특별시 비상계획과실 서기관	유인형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1호봉을 급함.
1974년 2월 13일		
대 통령		남부병원 근무를 명함.
◎ 1974.2.15		인천시 중구 지방행정주사 조상연
광주군 농촌지도소 지도원보	김 장 열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농촌지도원보에 임함.		3호봉을 급함.
3호봉을 급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농촌지도소 근무를 명함.		경북 달성군 지방행정주사 조필호
윤애자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1호봉을 급함.		2호봉을 급함.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		도봉구청 근무를 명함.
서영숙		월주시 지방행정주사 이종성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1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8호봉을 급함.
		중구 근무를 명함.

30-28 제 433 호

자

보 1974.2.21.

운수 3과 치방행정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부녀사업과장에 보함. 의약과 치방의무 정신병원파견 근무를 명함. 종로구 치방건축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종로구 치방건축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남부지방농립 독지사업소 기자좌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중구보건소 치방의무 정신 병원 치방의무 부기감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중구보건소 치방보건 기사보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4.2.16 중구보건소 치방행정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중구보건소 치방행정 사무관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이영환 김기입 지방행정사무판시보에 임함. 의약과 치방의무 기자시보 제1호봉을 급함. 김대로 도성만단 전채규 구도서 신태송 이원표 최남주 이한경	동대문구 치방행정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동대문구 치방행정 사무판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동대문구 치방비서관(3급율류상당)에 임함. 제2부시장실겸 시정개발담당 관실 근무를 명함. 경무처근무를 명함. ◎ 1974.2.17 구도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4.2.19 서부위생지방전기 처리장기원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북부지방농립 독지사업소 기원보시보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도봉구 치방토목 (토목과장) 기자좌 장옥환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김동찬 이인득 정종흡 송창희 송창희 정영국 김오권 장옥환
--	--	---	--

제 433 호 시 보 1974. 2. 21 3.0~29

농 지 파 지방농립 (사방조림제장) 기 좌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김 영 환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공무원교육원 교수부 근무를 명함. 의 약 파 지방의무 의무제장 기좌시보 김 상 대 정신병원파견 근무를 해제함.
◎ 1974. 2. 20 경 기 도 지방농립 양평군지제면 기사보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농립기원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조 종 천	도봉구 지방행정 청 소파장 사무관 양 회 준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제 1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성동구 지방의무 보건소장 기정 문홍목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및 제 4 호의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도봉구 지방농립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7호봉을 급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조 종 천	◎ 1974. 2. 25 인천시 지방지적 총무국세정과 기원보 김 강 문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충북충주시 지방행정 서기보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4호봉을 급함.	김 병 화	4호봉을 급함.
도봉구 급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일 교 주 부 행정사무관 조 윤 제 총무과(시장실)파견 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 교 주 부 사무관 채홍식 총무과(제 1 부시장실)파견 근무를 명함. 경상북도내무 국새마을지도과 사무관 채홍식	성동구 근무를 명함. 인천시 지방지적 동구세무과 기원 이명우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지적기원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성동구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서 울 특 별 시 장

30-30 제 433 호

시 보

1974. 2. 21

① 정 정	정한다.	
시보 제 430 호 ('74. 2. 6) 중 다음 과 같은 오류가 있으므로 이에 정		1974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장
폐이지 및 조항	오 기	정 정
교지 차례 139-3	서울특별시인사규칙(안)	서울특별시인사규칙
139-4 제4조 제1호	기능직은	기능직:
139-4 제4조 제3호	시장, 구청장	시장, 구청은 구청장
139-6 제11조 제1항	신규임명	신규임용
139-7 제17조	(3)	(2)
139-9 제21조제2항제2호	신규임명	신규임용
139-11 제24조	(3)	(2)
139-20 제53조제1항	신규임명	신규임용
139-23 제62조제4항	직명별급의	직명별봉급의
139-24 제65조제2항	전월, 1월 15일까지의 분	전월, 1월 15일까지의 분을
139-25 제73조제3항	선출한	선출한
139-26 제79조제1항	사장이상의	사장이상의
139-35 제108조	소정절차	소청절차
139-38 제118조	표창대상	표창대장
139-38 제119조제1항	신규임명	신규임용
139-40 제126조제4호나	불이익	불이익
139-113별지제41호서식 비고 2	증착, 작성인	증복, 작성일
139-114 별지제42호서식	(6) 초급	(6) 초대
139-115 별지제43호서식	(12) 강입	(12) 강임
139-124 별지제51호서식	정기 진급보고서, 경계처 분	정기 승급보고서, 경고처 분